

# 감 사 원

## 통보(모범사례)

제 목	등록면허세 과소 납부분 추징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 치 기 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 범 부 서	재정국 부과과
모 범 내 용	

### 1. 등록면허세 관련 규정 및 인터넷 신고 납부 현황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sup>70)</sup>는 구세(區稅)로서 2017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 중 23.4%<sup>71)</sup>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세입원이며, 부동산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에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정률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그 밖의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6천 원(정액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2009년부터 인터넷으로 신고·납부<sup>72)</sup>가 가능하고 해마다

---

70)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함

71) 2017년 구세 전체 세입 114,710백만 원 중 등록면허세(등록분)는 26,879백만 원으로 구세입 비중에서 23.4% 차지

72)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납세자의 인터넷 신고·납부가 증가(2017년 기준 영등포구의 인터넷 신고 비중은 74.9%)<sup>73)</sup>하고 있다.

## 2. 등록면허세 인터넷 신고자료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 경위와 성과

「지방세법」 제22조 및 제33조 등에 따르면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등록의 신청서 부분(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다만, 등기·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등록관서로부터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과과(이하 “영등포구 부과과”라 한다)는 2011년 1월 이후 등록면허세 수납사항과 등기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나, 2017년 10월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의 ‘등록면허세 수납사항 사무처리부’는 정액분을 제외하고 정률분만 발취하여 점검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부과과는 ‘납세자 신고자료’ 기반이 아닌 대법원 통보자료의 ‘등기원인’을 기준으로 삼아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록 시 정액분으로 신고

---

73) 2017년 전체 신고·납부 총 94,482건 중 70,788건

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2017. 11. 7. “등록면허세 인터넷 신고 자료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영등포구 부과과의 관내 각 동 담당(13명)은 2012년 11월부터 2017년 4월 까지의 대법원 통보 등기자료 중 인터넷 신고분 4,438건<sup>74)</sup>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등기 내용’과 ‘등록면허세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영등포구 부과과는 일제조사 기간 동안 삼성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AH)가 2015. 10. 29. 영등포구 여의도동 22(토지)와 관련하여 지상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접수일자 2015. 11. 2., 청구금액 1,667억여 원)를 하면서 정률세(세율 청구금액의 0.2%)를 적용하지 않고 정액분(등기종류 기타, 세액 7,200원)<sup>75)</sup>으로 등록면허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후 등기한 사례를 적발하여 2018년 2월 533백만 원<sup>76)</sup>을 추징하는 등 총 23건, 557백만 원의 등록면허세를 추징하였다.

### 3.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등으로 등록면허세 과소 납부 방지에 기여

그리고 영등포구 부과과는 2018. 1. 19. 관할 법원장 및 대한법무사협회장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등록면허세 과소납부 등기 사례를 안내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2. 14. 서울특별시에 세무종합시스템상 “대법원 통보 등기자료”와 “등록면허세 신고자료”를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기능 개선<sup>77)</sup>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25개 자치구에서 등록면허세 부과업무에

74) 기확인 자료 및 말소 등 단순 기타 등기자료 161,090건은 제외

75) 지방교육세(1,200원, 세율 20%) 포함

76) 등록면허세 449,921천 원, 지방교육세 83,313천 원, 가산세 포함

77) 정률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정액세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00902 변경’, ‘00999 기타’ 등록원인의 등록면허세 과세 처리 시 ‘주소변경’, ‘개명’ 등 상세등록원인을 추가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고지서 및 납부서에 표시하여 등기 시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참조)

**【세무종합시스템의 등록면허세 기능 개선 사항】**

- 세무공무원의 등록면허세 신고분 검토 시 취득·등록원인 상세내역을 확인
- 납세자가 이택스(인터넷납부시스템) 등록면허세 신고 시 상세등록 원인 입력 항목 추가
- 대법원 통보자료 열람 시 세무종합시스템상의 취득·등록원인 조회 항목 추가
- 등록면허세 첨부파일 등록·확인 기능 추가

**[그림] 세무종합시스템 등록면허세 기능 개선 화면**

<p>세무공무원의 등록면허세 신고분 검토 시 등록원인 상세내역 확인 가능</p>	<p>대법원 통보자료 열람 시 세무종합시스템상의 취득·등록원인명 조회 가능</p>
--	---

자료: 감사대상기관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포구, 강서구 및 관악구 등 4개 자치구는 영등포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18년 7월 현재 등록면허세 총 60건, 35백만여 원을 추징하였고 성동구 등 나머지 자치구도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영등포구 부과과는 대법원 통보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등록면허세 관련 납부자별 신고·납부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과소 납부분을 추징하고 등록면허세 과소 납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무종합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함

이러한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파함으로써 세입 증대 및 세원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조 치 사 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과과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소 납부분을 추징하고,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및 세원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